

문서관리번호	2024-0801
최종 수정일	2024. 08. 01
문서관리 담당	안전관리팀

(주)넥스오토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2024. 08

목 차

- 서문2
 - 1. 제정목적2
 - 2. 적용범위2
-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3
 - 1. 임직원 윤리.....4
 - 2. 공정한 경쟁과 거래.....5
 - 3. 고객가치 실현6
 - 4. 임직원 존중7
 - 5. 지속가능성 추구8
- 경영 시스템9
- 부록 10
 - 1. 담당 연락처..... 10
 - 2. 참고문헌 10

1. 제정목적

(주)넥스오토는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주)넥스오토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다. (주)넥스오토의 모든 구성원은 본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주)넥스오토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를 포함하며, (주)넥스오토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주)넥스오토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넥스오토 5 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뇌물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 ¹ 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 ² 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¹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² 내부자 거래에는 흔히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반독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조달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고객가치 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고객 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품질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보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4. 임직원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지속가능성 추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사회공헌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경영 시스템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조직 및 보고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실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교육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처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반 정보공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주)넥소오토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현대자동차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당사(이하 "당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넥소오토는 당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추후 국내외 산업계 추이 및 업계 동향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당사는 거래업체(하위 당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다. 당사 책임과 역할

(주)넥소오토의 당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넥소오토 및 (주)넥소오토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당사가 본 행동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넥소오토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가 당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규범을 위반한 당사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주)넥소오토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당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 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주)넥소오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넥소오토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넥소오토는 당사의 구성원이 본 행동규범과 관련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하여 당사가 본 행동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당사가 거래업체(하위 당사)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규범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당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당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이나

흡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③ 당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④ 당사는 사업장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 ① 당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② 당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당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 ⑤ 당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하위 당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 ①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당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① 당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당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현대자동차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정보보호

- ① 당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당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당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적재산 보호

- ① 당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① 당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주)넥소오토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 /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¹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④ 당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²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⑤ 당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2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³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① 당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 ① 당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 ①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 ① 당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바. 화학물질 관리

- ① 당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4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 동물복지

- ① 당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 ① 당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당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4. 노동/인권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 ①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당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합니다.
- ② 당사는 (주)넥스오토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 적용 대상자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였거나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 또는 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강제노동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제작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포함됩니다.
- ③ 당사는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실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④ 당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각 당사는 행동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주)넥스오토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된 원재료, 부품 등을 당사가 공급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⑤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및 거래업체(하위 당사)들에게 행동규범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⑥ 당사는 당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강제노동 이용 상황 및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주)넥소오토에 즉시 제공합니다.
- ⑦ 당사는 거래업체(하위 당사)에게 동등한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업체(하위 당사)가 각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⑧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⑨ 당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하위 당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당사의 거래업체(하위 당사)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들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⑩ 당사는 당사의 거래업체(하위 당사)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제품에 포함된 제품 포함)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주)넥소오토에 알려야 합니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① 당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당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당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넥소오토 인권현장과 (주)넥소오토 윤리현장·실천규범 및 (주)넥소오토 당사 행동규범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근로시간 관리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① 당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① 당사는 본 당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 윤리적인 채용

① 당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당사는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③ 당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당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 보건경영시스템⁵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① 당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당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 ① 당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 ① 당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 ③ 당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 ① 당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보건 관리

- ① 당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 ① 당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의 관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가. 기업 성명서 공시

- ① 당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선임

- ① 당사는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 ① 당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 ① 당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마. 정보 관리

- ① 당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 ① 당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구제수단 마련

- ① 당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 거래업체(하위 당사) 관리

- ① 당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거래업체(하위 당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거래업체(하위 당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당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 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규범 준수

- ① 당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주)넥스오토 또는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6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 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공표)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 및 질병발생 기록',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외 윤리헌장 준수 동의서, 비상상황 매뉴얼, 근로시간 기록 일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행수준 평가 시 지표별 답변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

7. 공급망 실사

- ①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나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

8. 징계절차

가. 징계종류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자는 징계처리 한다.

1. 경고, 직무상 또는 회사의 불이익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견책 : 월간 경고 2회 이상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한 경우
3. 감봉 : 월간 경고 2회 이상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직 : 월간 경고 3회 이상 또는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5. 해직 : 월간 경고 3회 이상 또는 강제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종업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종업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참석하고 이를 보관한다.

다.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종업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라. 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경고 대상이다.

1. 지각·조퇴 등이 월 3회 이상인자
2. 무단 결근이 월 2회 이상인 자
3.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를 어기는 자
4. 직무상 성과가 없거나 실적이 없는 자
5. 기타 업무상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자

마. 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 대상이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회사기밀 및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4.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 근무한 경우
5. 법원의 형이 확정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
6. 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바. 해고예고

1.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전까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사. 해고예고 예외적용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